

계좌간자동이체 신.구약관 비교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 ~ 2조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신청, 변경 및 해지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체지정일 2일전까지 자동이체 신청서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에 의해 신규 및 변경,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, MMDA, MMF, 수익증권, 적립식예금(신탁), 대출계좌 등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~ 7조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신설</p> <p>제8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외에도 예금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관련 예금, 신탁약관 및 은행 내규를 준용합니다. 다만, 여신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우선합니다</p>	<p>제1조 ~ 2조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신청, 변경 및 해지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체지정일 2일전까지 자동이체 신청서 또는 전자금융을 통하여 신규 및 변경,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, MMDA, MMF, 수익증권, 적립식예금(신탁), 대출계좌 등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~ 7조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계좌이동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고객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고객이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</p> <p>제9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외에도 예금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관련 예금, 신탁약관 및 은행 내규를 준용합니다. 다만, 여신의 경우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우선합니다</p>	<p>공인인증서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따라 의무사용이 폐지되고,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대체</p> <p>계좌이동서비스 신설</p>